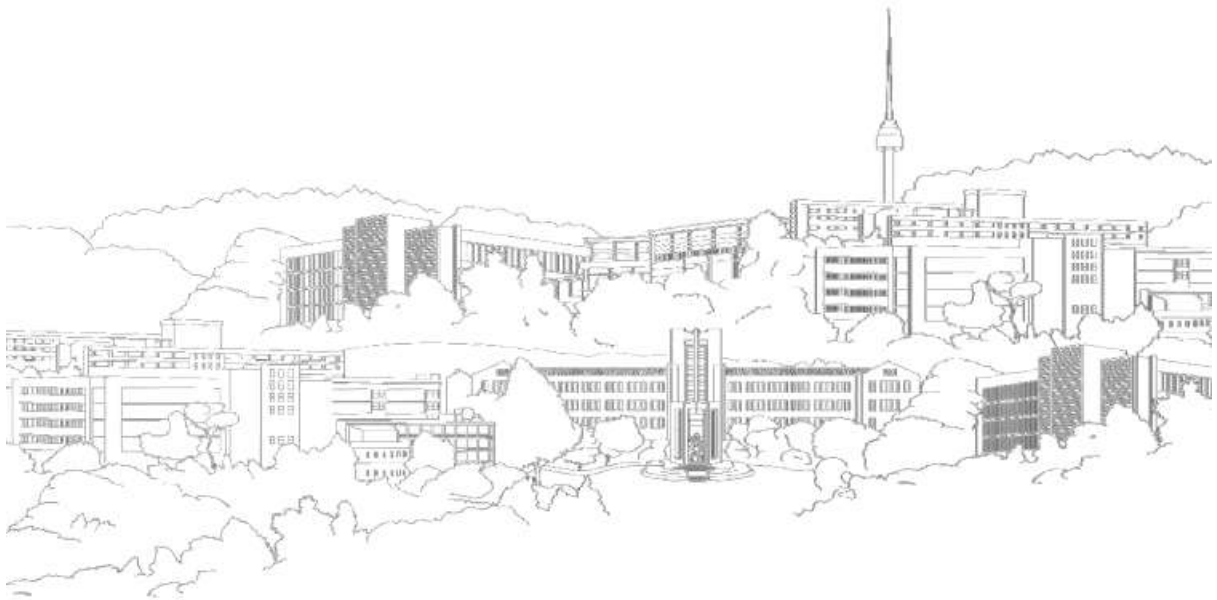


---

# 2022학년도 동국대학교 편입학 기본계획

---

2021.05.



- 본 기본계획은 관계 법령 및 교육부 지침, 우리대학 학칙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원서접수 전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([ipsi.dongguk.edu](http://ipsi.dongguk.edu))에서 「모집요강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## 2022학년도 편입학 전형 주요사항

### 1. 전형요소 및 방법 [일반/학사편입 동일]

구분	합격배수	전형요소 및 방법(%)		
		1단계 성적	필답고사	전적대학성적
1단계	7배수	-	100	-
2단계	-	70	-	30

### 2. 필답고사 출제 방식 [일반/학사편입 동일]

계열	과목(반영비율)	문항 수	시간	문항유형
인문계열/ 영화영상학과	영어(100%)	영어 40~50문항	80분 이내	객관식 (5지선다형)
자연계열	영어(40%) + 수학(60%)	영어·수학 총 40문항	90분	

### 3. 전적대학 성적 반영방법 [일반/학사편입 동일]

구분	반영구분	비고
국내공통	단일대학	단일대학
	전적대학 편입학한 경우	최종소속대학
	학점은행제, 독학사	1단계 필답고사를 기준으로 비교전적대학성적 산출
해외	해외대학	
전적대학의 백분위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자		

# 1. 전형유형 및 지원자격

## 가. 일반 편입학

- 1) 정원내외 구분 : 정원내외
- 2) 모집학년 : 3학년
- 3) 지원자격 (고등교육법 제23조의 2 및 제51조,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)

구 분		지원자격
일반 편입 (정원내)	국내 4년제 이상 대학 (4년제 정규대학, 방송통신대학, 산업대학, 사이버대학 등)	▶ 2학년 또는 4학기(계절학기는 학기수에 포함하지 않음) 이상 수료한 자 및 2022년 2월 수료예정자 ※ 2학년 수료 : 각 대학에서 규정하는 2학년(4학기) 이상 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함
	국외 4년제 이상 정규대학	▶ 2학년 또는 4학기(계절학기는 학기수에 포함하지 않음) 이상 수료(2022년 2월 이전 수료예정)하고,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/2 이상을 취득(2022년 2월 이전 취득예정)한 자 ※ 영국학제의 3년제 대학은 2년 이상 등록하고, 졸업기준학점의 2/3 이상을 취득(2022년 2월 이전 취득예정)한 자 ※ 5년제 이상 대학은 졸업기준 학기(학년)의 1/2 이상 수료(예정)하고, 졸업기준 학점의 1/2 이상 취득(2022년 2월 이전 취득예정)한 자
	국내 · 외 전문대학 (2년제, 3년제)	▶ 졸업자 및 2022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
	학점은행제	▶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한 학점취득자로서 ▶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(전문)학사학위 취득자 및 2022년 2월 취득예정자 ※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"(전문)학사학위(수여예정)증명서"를 제출해야 함 ② 학사학위과정자로서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※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70학점 이상 취득한 "학점인정증명서"를 제출해야 함
▶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		
일반 편입 (정원외)	농어촌학생	▶ 일반편입(정원내)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▶ 농어촌 지역 또는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고교를 졸업하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[유형1] : <농어촌지역> 중 ·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 학교 졸업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연속으로 이수하고, 재학기간 6년 동안 부 · 모 · 지원자 모두가 <농어촌지역>에 거주한 자 ② [유형2] : <농어촌지역> 초 · 중 ·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연속으로 이수하고, 재학기간 12년 동안 지원자가 <농어촌지역>에 거주한 자 ※ 단, 특수목적고(과학고, 외국어고, 국제고, 예술고, 체육고, 마이스터고) 졸업자는 지원 불가

구 분	지원자격
특성화고교졸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일반편입(정원내)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</li> <li>▶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*를 졸업하고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특성화고등학교란 특성화고,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(종합고)를 의미함.</li> </ul> </li> <li>※ 단, 마이스터고, 종합고 “보통과”, 대안학교,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자는 지원불가</li> <li>▶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우리대학 지원 모집단위 학과(전공)가 동일계열인 자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, 동일계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, 특성화고에서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는 지원가능</li> </ul> </li> </ul>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일반편입(정원내)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</li> <li>▶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호에 따른 수급자</li> <li>②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</li> <li>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</li> </ul> </li> </ul>
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일반편입(정원내)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</li> <li>▶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서 재학하는 동안 시·도 교육감이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</li> <li>②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</li> <li>③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(※ 단, 종합고 “보통과” 졸업자는 지원 불가)</li> <li>④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</li> </ul> </li> <li>▶ 2022년 2월 28일(기준일)까지 다음 산업체에서 통산 3년 이상 근무(영업)하고,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근무(영업) 중인 자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</li> <li>②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(사업주포함) 이상 사업체</li> <li>③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(창업·자영업자 포함)</li> <li>④ 4대 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종사자 (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)</li> </ul> </li> <li>※ 병역특례기간 동안의 산업체 경력, 직업군인 및 의무 복무 등의 준경력 재직기간 포함</li> </ul>

**나. 학사 편입학**

- 1) 정원내외 구분 : 정원외
- 2) 모집학년 : 3학년
- 3) 지원자격 (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)

구 분		지원자격
학사 편입 (정원외)	국내 4년제 대학 (4년제 정규대학, 방송통신대학, 산업대학, 사이버대학 등)	▶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2022년 2월 이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
	국외 4년제 정규대학	
	국외 3년제 정규대학	▶ 3년제 대학(학사학위과정)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2022년 2월 이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
	학점은행제 (독학사)	▶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한 학점취득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자 및 2022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※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"학사학위(수여예정)증명서"를 제출해야 함

**2.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**

**가. 모집단위** : 2020학년도 신입학 모집단위 기준

※ 영어영문학부, 건축공학부는 전공단위로 모집

**나. 모집 제외 모집단위**

- 1) 경찰사법대학, 사범대학, 예술대학(영화영상학과 제외) 모집 제외
- 2) 교육부 제공 「2022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」의 2022학년도 모집인원 산출 기준에 따라 모집가능 인원이 없는 학과 또는 전공 모집 제외  
※ 추후 「2022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」에서 확정 안내 예정

**다. 모집단위별 모집인원**

: 추후 「2022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」에 확정 안내 예정

### 3. 주요 전형일정(예정)

구 분	일 정
원서접수(인터넷)	2021년 12월
필답고사	2022년 1월
1단계 합격자 발표	2022년 1월
서류제출	2022년 1월
최초합격자 발표	2022년 2월
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	2022년 2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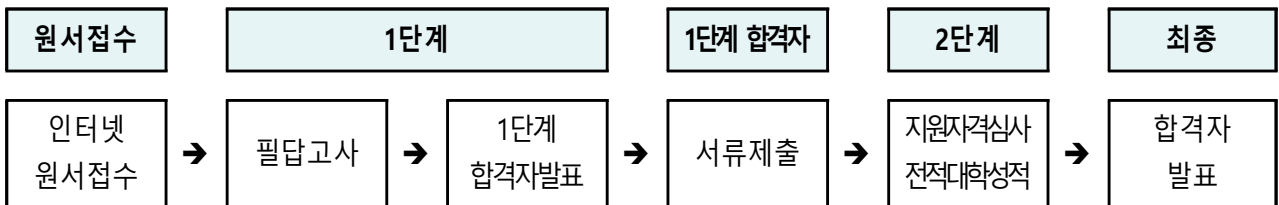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### 4. 전형방법 [일반/학사편입 동일]

#### 가.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

계열		합격 배수	전형요소 및 방법(%)			
			1단계 성적	필답고사		전적대학 성적
				영어	수학	
인문계열/ 영화영상학과	1단계	7배수	-	100	-	-
	2단계	-	70	-	-	30
자연계열	1단계	7배수	-	40	60	-
	2단계	-	70	-	-	30

#### 나. 전형절차



**다. 필답고사 과목 및 출제방식**

계열	과목 및 문항수	시 간	문항유형
인문계열/영화영상학과	영어 40~50문항	80분 이내	객관식 (5지선다형)
자연계열	영어·수학 총 40문항	90분	

구 분	영어	수학
출제범위	인문, 사회, 경제경영, 자연과학, 기술공학, 문화, 생태환경, 4차 산업 등과 관련된 주제	우리대학의 기초 교과목 「미적분학 및 연습1, 2」에서 다루는 극한, 미분, 적분의 기본 개념과 활용법, 다변수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 등
출제유형	독해 / 빈칸 채워 글의 흐름 완성하기 / 어휘 및 속어 / 문법 이해 능력 측정	극한, 연속성 / 미분 / 적분 / 다변수 미적분 / 선형대수

**라. 전적대학성적 반영방법**

- 1) 반영방법 : 전적대학 취득 백분위 점수(100점 만점 환산점수)에 반영비율(30%)을 적용하여 반영
- 2) 대학 과정별 반영방법

구분		반영구분	비고
국내공통	단일대학	단일대학	▶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한 성적증명서의 성적으로 반영함
	전적대학 편입학한 경우	최종소속 대학	▶ 1개 학기도 이수하지 않아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대학 성적 반영
	학점은행제, 독학사		
해외	해외대학		필답고사를 기준으로 <u>비교전적대학성적 산출</u>
전적대학의 백분위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자			